

200-048. 사상사건 기소장 결정판결 사철(鮮內 검사국 정보)

■ 1936년 1월 8일부터 1938년 12월 27일까지 淸津, 光州, 釜山, 平壤, 大邱, 公州, 海州 등 7개 지방법원 검사정이 송부한 16건 104명에 대한 예심청구서, 예심종결결정서, 판결서 수록

- 사건에 따라서는 판결서만 있는 것도 있고 예심종결결정서와 판결서 또는 세 가지가 모두 있는 것도 있다.
- 적용 법률은 치안유지법 위반, 범인은닉, 강도상해 및 군기보호법 위반이며, 군기보호법 위반사건은 중국인 7명에 대한 것이다. 사건내용은, 사상에 관한 것이므로 민족주의운동, 공산당활동 및 이에 부수된 출판활동, 범인은닉, 강도상해 등 反 일본제국주의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들을 사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全順童 등 6명의 사건은 청진지법 검사정이 1936년 1월 8일 치안유지법 위반, 범인은닉, 강도상해로 예심을 청구하고, 1936년 11월 13일 예심을 종결, 공판에 회부되었다. 1937년 12월 27일 판결에서 崔炳學·全池龍은 징역 2년 6월, 全順童·全仁華는 징역 2년, 鄭台君은 징역 1년 6월, 黃鳳學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2. 尹淳植 등 5명의 사건은 광주지법 검사정이 1937년 9월 7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청구한 예심종결결정서와 판결서가 남아 있다. 1938년 1월 11일 판결에서 尹淳植·尹小鉉은 징역 1년, 丁鍾喆·尹庚得은 징역 8월, 尹在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3. 金台榮 등 12명의 사건은 부산지법 검사정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을 청구하였으며, 1936년 12월 14일 예심종결결정에서 河弼源은 면소되고, 그 외는 공판에 회부되었다. 1938년 1월 14일 판결에서 金台榮 징역 3년, 姜貴柱·李光熹 징역 2년, 愼萬重 징역 1년 8월, 韓三璿 징역 1년 6월, 李泰榮·朴命洙 징역 1년 2월, 鄭小秀·李相鮮 징역 1년, 金洪圭·朴根錫·鄭致溶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 4. 金元述 등 12명의 사건은 청진지법 검사정이 1936년 12월 28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청구한 예심종결결정서이며, 1938년 1월 31일 판정에서 金元述·金熙鳳·李英俊 징역 5년, 朴鶴松·方錫鉉 징역 2년 6월, 李昌植·公昌植·李濟奉·李世林·趙權衡·金俊弘·張在神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5. 安炳杰 등 5명의 사건은 평양지법 검사정이 1938년 2월 8일 송부한 판결서로, 安炳杰·朴喆範 징역 1년 6월, 安載郁·安炳濬·梁柱濬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 6. 吳松會 등 7명의 사건은 평양지법 검사정이 송부한 판결서로, 당사자 모두가 중국인이며 군기보호법 위반이다. 형량은 吳松會·楊雲珣 징역 5년, 楊春亭 징역 3년, 王學政·李光華 징역 2년 6월, 平文學·楊兆泰 징역 2년 등이다.
- 7. 安信永사건은 1938년 1월 24일 치안유지법·출판법 위반 예심종결결정으로, 평양지법 검사정이 송부한 것이다. 1938년 2월 22일 판결에서 금고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8. 全龍奎 등 4명의 사건은 평양지법 검사정이 송부한 예심종결결정서이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에 회부되어 1938년 3월 9일 판결에서 全龍奎 징역 1년 6월, 車銘徹·李齊鉉·朴觀洙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 9. 盧在甲 등 5명의 사건은 1938년 2월 3일 치안유지법 위반의 예심종결서로, 평양지법 검사정이 송부한 것이다. 1938년 3월 9일 판결에서 盧在甲 징역 3년, 金洪直 징역 2년

- 6월, 許晟道·姜永甲 징역 2년, 宋世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10. 全治殷 등 13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1937년 2월 4일 예심종결을 거쳐 全炳龍은 免訴되고, 그 밖에 12명은 청진지방법원에서 1938년 3월 24일 판결을 받았다. 全治殷 징역 8년, 金重星 징역 7년, 許好益·李溟金·景喆·許泰星 징역 4년, 朴鳳仲·金升烈 징역 3년, 李周杓·崔周璜 징역 2년, 趙得漢·許金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이 가운데 李周杓·崔周璜·趙得漢·許金旬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1. 丁吉成 등 28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1938년 2월 28일 판결서로서, 丁吉成 징역 6년, 朴勝源·黃大用·李秉一·白樂道·羅鼎雲 징역 3년 6월, 徐丙民·趙忠九·沈遠燮·林在華·金鍾宅·洪正泰 징역 3년, 朴準用·趙寬濟·白完石·文鍾義·柳萬祚·金時東·崔春端·劉昌德·洪錫柱·趙重壽·權鶴石·金在旭 징역 2년 6월, 林鍾業·白樂三 징역 2년, 朴長伯·金實慶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12. 청진지법 검사정이 송부한 문건으로, 許國澤의 치안유지법 등 위반사건에 대한 공판청구서와 1938년 5월 24일 판결서이다.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13. 1938년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의 판결서로서, 金玄洙에게 치안유지법 등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14. 1938년 7월 11일 부산지법 검사정이 송부한 판결서로서, 金光洙·金正魯에 대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15. 해주지법 검사정이 송부한 예심청구서, 예심종결결정서 및 판결서로서, 당사자 金聖壽에 대하여 1938년 7월 15일 치안유지법 등 위반으로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16. 1938년 12월 27일 부산지법 검사정이 송부한 문건으로, 당사자 薛甲秀에 대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